

수출입 정보

2019.08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02. 수출입물류 동향

- 7월부터 中企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 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03. FTA 동향

- 남미·유럽 아우르는 거대시장 탄생 '메르코수르·EU FTA' 타결
- '태평양동맹 가입 협상 시작 미주 전역으로 수출 다변화 기대

04. 최신 품목분류

- 차량 유압식 제동장치(브레이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는?
- 플라스틱 대체재 '갑각류 껍데기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6.2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예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29호, 2019.7.1>

□ 개정 사유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 주요 내용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간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신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 10단위 기준 82개 품목 선정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85호, 2019.7.17>

□ 개정 사유

- 용도 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를 통해 업체 및 세관직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 주요 개정 내용

- 사후관리 면제 확대 및 기간 단축(제11조 등)
 -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 내용연수가 짧아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사후관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과 일치(제26조 등)
 -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일치
 - 사후관리 위탁범위(반입기한연장 신고)를 명확히 규정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개정 별표 14호 서식)

02. 수출입물류 동향

“7월부터 中企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관세청, 참여 기업에 인증수출자 교육이수 점수도 부여”

올 7월부터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FTA 미활용 기업, 중국産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7월부터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과 원산지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로 ▲원산지 사전판정팀(자체 계획 수립, 대상기업 선정, 원산지 사전판정 및 모의검증), ▲컨설팅지원팀(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지원,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인증지원팀(인증수출자 심사, 비인증수출자 맞춤형 인증 및 갱신 지원)으로 구성된 ‘원산지 사전판정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産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등 검증 취약 산업군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産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産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등을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02. 수출입물류 동향

“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기재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통고처분액,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시행일 : 2019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금액(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이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등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할부 결제(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일시납에 따른 자금 부담도 덜게 됐다. 이 경우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된다.

■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시행일 : 2019년 7월 1일)

7월 1일부터는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에 따라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운영(既 시행)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해주는 제도를 4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5일(기존 30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既 시행)

해외 직접구매 등 특송물품 목록통관 시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6월 3일부터 필수로 기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既 시행)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료기기는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신고해 수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31개 품목군), ▲인공망막시스템, 인공각막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 희귀질환자에 필수인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등을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02. 수출입물류 동향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 설치”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7월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애로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국 12개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0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62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0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94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0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2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11

03. FTA 동향

“남미·유럽 아우르는 거대시장 탄생 ‘메르코수르·EU FTA’ 타결”

“세계 GDP 40%, 8억 인구에 교역량 1,000억 달러 이르는 단일시장 탄생”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 EU가 20여 년간 끌어온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선언했다.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6월 28일 브뤼셀에서 메르코수르와 EU가 FTA 체결을 공식 선언했으며, 앞으로 10년여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을 발표했다고 7월 1일 소개했다.

이번 FTA 타결은 유럽과 남미지역을 아우르는 단일시장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8억명의 인구에 연간 교역량이 1,000억 달러(약 116조원)에 달하고,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하며, 최종에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메르코수르 동맹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은 쇠고기를 비롯해 농·축·수산물의 유럽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는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수출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1999년부터 진행해온 이번 FTA 협상을 약 20년 만에 마무리하고 드디어 협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며,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 시작 후 산업별 개방 정도에 대한 견해차가 커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으나 2016년부터 재협상을 시작해 30회가 넘는 협상을 통해 견해차를 좁힘으로써 마침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이번 FTA를 계기로 메르코수르 동맹국 모두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정부는 메르코수르·EU FTA 체결로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다소 고립 상태였던 아르헨티나와 메르코수르가 국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이번 FTA로 메르코수르는 ▲제도적 품질 향상, ▲제품 경쟁력 향상, ▲메르코수르, 경제블록으로 성장, ▲중소기업 발전, ▲투자 유인 촉진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수출에 제한이 줄어들어 따라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중간재 수입이 용이해져 현지 경쟁력 역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상대 교역국에 대한 투자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03. FTA 동향

“태평양동맹 가입 협상 시작 미주 전역으로 수출 다변화 기대”

“산업부, 9월부터 준회원 가입 협상 시작 ... 멕시코완 FTA 체결 효과 예상”

정부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가입을 통해 미주지역 전역으로 수출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올 9월 중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 20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했으며, 준회원국 가입은 PA와의 양자 FTA 체결을 의미한다.

PA는 준회원국을 늘리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과 20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기존 4개국과 협상을 종료한 후 우리나라와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기존 4개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9월부터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PA는 이번 회의에서 올 9월 중 협상의 첫 번째 단계로 협상세칙(ToR)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PA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약 2조 달러, 인구 2억 3,000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우리와 상호보완의 경제구조를 보여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PA 협상 개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해 북미-중미-남미로 이어지는 FTA 연결망(network)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수출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임에도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엔 우리나라가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멕시코와 FTA를 맺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2002년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BIT)을 한층 선진화해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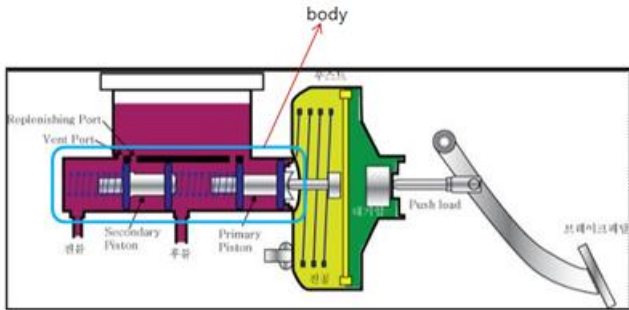
04. 최신 품목분류

“차량 유압식 제동장치(브레이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는?”



<물품설명>

- 차량 유압식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의 Body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
- (기능)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바디 내에 스프링, 피스톤, 오링, 로드, 스페이서(리테이너) 등이 장착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페달과 연결된 로드의 힘이 본 물품에 전달되어 내부 스프링을 밀면서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압력이 파이프를 통해 휠 실린더에 전달됨
- (형상) 브레이크 오일 탱크 및 전륜·후륜으로 연결되는 파이프와 결합될 수 있도록 몸체 중간 부분에 여러 개의 나선 홀이 있으며 끝단에 플랜지가 결합되어 있음
- 크기(mm) : 길이(L) 171 / 외경(R) 32
- 재질 : 탄소강(GC250)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여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슈(shoe)·세그먼트(segment)·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 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유압식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 몸체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내부에 스프링, 피스톤, 실 등이 장착되어 유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04. 최신 품목분류

“플라스틱 대체재 ‘갑각류 껍데기’”



- 생분해되고 항균 기능까지 제공
- 독성물질 대신 미생물로 키틴 추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학계에서는 천연물질을 이용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나 석탄을 원료로 합성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데, 완전히 분해되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등 심각한 오염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학자들이 가재, 게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에 주목하고 있다. 가재와 게의 껍데기에는 키틴과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를 가공하면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연물질로 자연에서 쉽게 분해돼 사라지고, 양도 유기물질 중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아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바다에서 거꾸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책을 찾은 셈이다. 갑각류 껍데기의 주성분은 키틴으로 이뤄져 있다. 키틴은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처럼 사슬 구조로 이뤄진 고분자 물질로 열을 가하면 쉽게 가공할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800만 톤의 갑각류 껍데기를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구 버려지는 키틴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들려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다. 키토산은 키틴에 열을 가해 일부 성분이 바뀐 물질이다. 면역력을 높여 식품과 화장품에도 쓰이는 등 생활주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한 연구진은 분쇄기를 이용해 껍데기를 곱게 부순 다음 식초로 녹여 키틴을 얻는 방식을 시도했으며, 이어 키틴에 열을 가해 원하는 형태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관련 제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고 잘 분해돼 나중에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율표에서는 이렇게 제조된 **천연 고분자 물질을 제3913호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한다. 해설서 제3913호에서는 알긴산(alginic acid)과 그 염과 에스테르·경화단백질·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예 : 염화고무·산화고무)·텍스트란·글리코겐·키틴과 리그닌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